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- 1888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, 제17조, 제21조,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[별표6]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실시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1일

노 원 구 청 장

1. 위반 내역 및 처분 대상자

연번	운전자	생년월일	주 소	차량번호	위반일시	위반내용	공고사유	비고
1	박*석	64100*	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3길 8-****	서울32바 3***	2026. 10. 27.	정류소 정차질서 문란	폐문부재	등기우편 미송달

2. 공고 기간 : 2026. 11. 11. ~ 2026. 11. 25.
3. 의견진술 기간 : 2026. 11. 25. ~ 2026. 12. 9.
4. 의견진술 방법 :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방문, 팩스(02-2116-4639) 또는 우편 제출
5. 공고 방법 :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
6.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됩니다.
7.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(☎ 02-2116-4044)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